

[사 건 명] 행심 2017 - 7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 개요

가. 2017. 3월 경 청구인, ◇◇◇, ■■■가 피해학생(●●●)에게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하여 피해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던 친구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페이스북 메신저 상으로도 이상한 점이 보이자 청구인 및 관련 학생들이 그 남자 친구들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은 ‘속여서 미안’이라 대답하였고 이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었다.

나. 이후 관련 사실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되고 피해학생은 다른 반 친구와 놀거나 혼자 지내게 되었

다.

다. 2학기 시작 후에도 청구인, ◇◇◇, ■■■은 피해학생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학생은 계속 혼자 지내게 되면서 피해학생을 왕따 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피해학생 母가 2017. 09. 11.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다.

라. 2017. 09.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관련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3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 하였다.

마. 피해학생 ○○○이 청구한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에서 2017. 10. 24. “일부인용” 결정되어 청구인, ◇◇◇, ■■■에게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금지’기간을 졸업시까지로 추가 결정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측의 청구 사실 및 증거 등에 대한 내용을 송부 혹은 전달된바가 없어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엇에 대한 심의인지 알 수 없었고 방어 준비를 위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

나. 서로 간에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 건임에도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심의하였고 충분한 증거 혹은 증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피해학생의 주관적 진술만 인정하여 처분하였다.

다. 남자친구를 먼저 소개 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고 ○○○이 먼저 소개시켜 주었으며 청구인과 ◇◇◇은 ‘○○○이 ⊕⊕⊕을 걸레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포함되며 피해학생은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피해학생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대립되는 부분에 관하여 참고하였다.

나. 본 사안이 2017. 09. 11. 학폭으로 접수되어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7. 09. 15.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에서 학폭위 개최 결정에 따라 2017. 09. 20. 학폭위를 개최하였다.

다. 본 사안에 대한 학폭위는 19:40경 개최되었고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 확인과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기회를 제공하고

자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12:30경 까지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였다.

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판정은 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학폭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결정하였다.

#### IV. 청구인의 보충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주장한다.

가. ○○○이 전년도에도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다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고 속여 왔었으며, 청구인도 같은 방법으로 ○○○에게 오히려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아픈 ○○○을 위해 마지막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한 청구인에게 사회봉사 3일 등 처분은 과한 조치이다.

#### 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 및 ◇◇◇, ■■■가 가해 학생으로 지난 2017. 9. 11.경 피청구인 ○○중학교에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 ●●●과 학부모 및 가해 학생 청구인 △△△과 ◇◇◇, ■■■ 학생 및 각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9. 15.경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2017. 9. 20.경 ○○중학교 제7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 회의에서 심의 결과, 청구인 △△△의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2점, 지속성 3점, 고의성 2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1점을 받아 9점에 해당하여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3일, 제2호 4개월간 접촉금지, 제3항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지난 2017. 9. 20.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개최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5:30에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다른 사건의 심의가 길어져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녁 7:40경에 개최되었고 심의 시간이 길어져 자정을 넘긴 다음 날 새벽 12:30까지 심의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먼저, 청구인 △△△의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피해 학생인 차지민측의 청구 사실 및 증거 등에 대한 내용을 송부 혹은 전달된 바가 없어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엇에 대한 심의인지 알 수 없었고 방어 준비를 위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 및 ◇◇◇, ■■■가 가해 학생으로 지난 2017. 9. 11.경 피청구인 ○○중학교에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 ●●●과 학부모 및 가해 학생 청구인 △△△과 ◇◇◇, ■■■ 학생 및 각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9. 15.경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2017. 9. 20.경 ○○중학교 제7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이 서로 간에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 건임에도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심의하였고 충분한 증거 혹은 증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피해학생의 주관적 진술만 인정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중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2017. 9. 11.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하고 나서 이 사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및 각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학폭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경찰관의 수사절차나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학교 내 폭력사건에 대해 학교 담당교사가 1차 조사 후 외부 전문가와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처분하는 과정을 볼 때, 위 학폭위 회의가 열릴 때까지 피청구인 ○○중학교에서 2017. 9. 11. 이 사건을 접수하고 4일 후인 같은 해 9. 15.에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시 5일 후인 같은 해 9. 20. 이 사건 학폭위 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조사와 증거,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각 당사자마다 사건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충분한’ 조사는 주관적인 것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학폭위 구성 위원들의 판정 점수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 진술만을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심히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